

建築法解説

건설부 건축과장 박우하

居室의 반자높이,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

令第13條 (居室의 반자높이)

- ① 居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 ② 一般學校의 教室로서 그 바닥面積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3 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 ③ 劇場, 映画館, 演藝場, 公會堂 또는 集會場의 客席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4 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機械換氣裝置의 設置를 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④ 前各項의 반자높이는 室의 바닥面부터 測定하되 同一한 室로 반자높이가 다른 部分이 있을 때에는 그 平均높이로 한다.

第1項은 一般建築物의 第2, 第3項은 特殊建築物의 天井의 높이에 關한 規定이고 第4項은 各項의 天井의 높이의 算定方法에 關한 規定이다. 「그 平均의 높이」는 室의 容積을 바닥面積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令第14條 (居室의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

最下層 居室의 바닥이 木造인 境遇의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은 다음 各號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敷土다지기 기타 防濕上 有效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1. 바닥높이는 直下의 地面부터 그 바닥上面까지 45센치미터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2. 外壁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壁의 高이 5 미터以下마다 面積300平方센치미터 以上的 換氣孔을 만들고 쥐의 侵入을 막은 設備를 하여야 한다.

最下層에 있는 居室로서 바닥이 木造인 때의 規定이다. 換氣孔을 만들고, 쥐의 侵入을 막는 設備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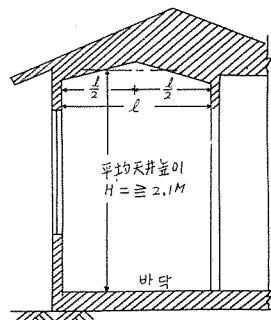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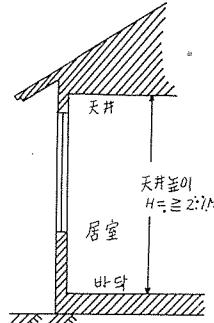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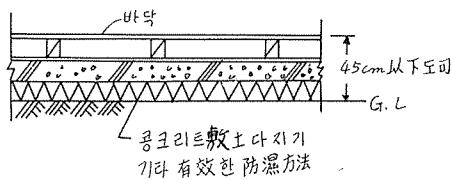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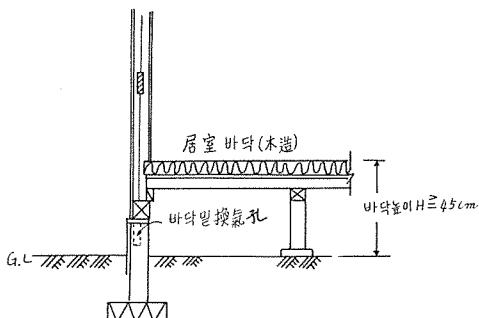


그림 (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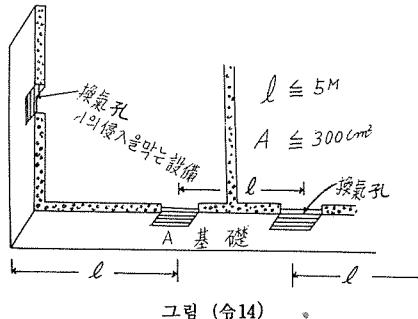


그림 (令14)

階段에 關한 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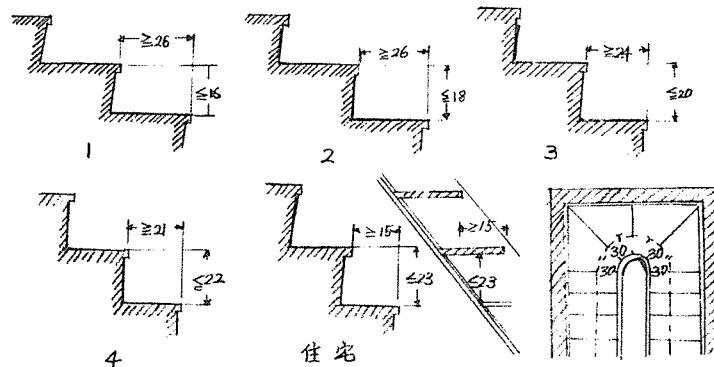
令第15條 (階段 및 階段站의 幅과 高이 및 디딤바 닥치수)

① 階段 및 階段站과 段높이 및 디딤바닥의 치 수는 다음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屋外階段의 幅은 60센치미터 以上, 住宅의 階段(共同住宅의 共用階段을 除外한다)의 段높이는 23센치미터 以 下 디딤바닥은 15센치미터 以上으로 할 수 있다.

	階 段 の 種 類	階段 및 그 階段站의 幅 (單位센치미터)	段 높 이 (單位센치미터)	디딤바닥의 鑲이 (單位센치미터)
(1)	國民學校에서의 兒童用階段	140以上	16以下	26以上
(2)	中學校나 高等學校에서의 學生用階段 또는 百貨店,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이나 集會場에서의 客用階段	140以上	18以下	26以上
(3)	直上層의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00平方미터를 넘은 地上層 또는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를 넘은 地下層의 階段	120以上	20以下	24以上
(4)	其他의 階段	75以上	22以下	21以上

② 도름階段의 部分에 있어서 段넓이의 치수는 디딤바닥의 좁은側의 端部부터 30센치미터의 位置에서 測定한다.

이 條文에서는 各種類別에 따른 建築物의 階段의 階段站의 幅, 段높이 디딤바닥의 鑲이와, 도름階段의 段넓이의 測定方法을 揭記하고 있다.



T: 도름階段의 디딤바닥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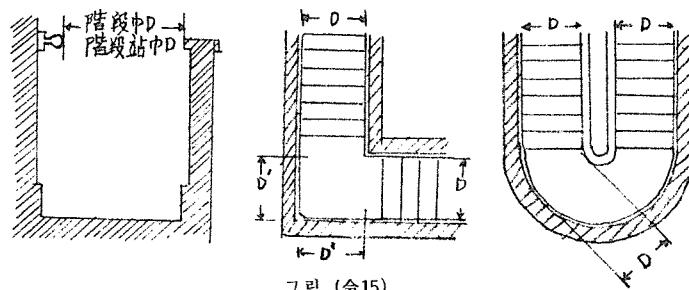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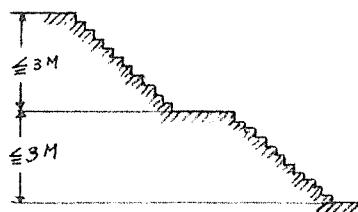


그림 (令15)

令第16條 (階段站의 位置 및 段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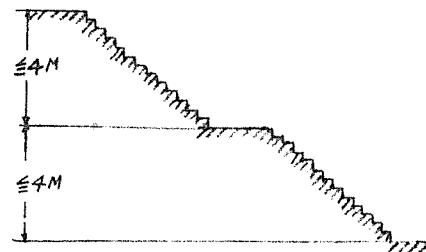
① 前條第1項의 (1) 또는 (2)에 該當하는 階段으로서 그 높이가 3 미터를 超過하는 것은 높이 3 미터以内마다, 其他階段에 있어서는 높이 4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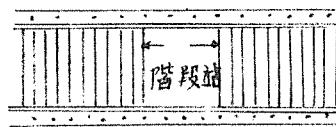
(1) (2)에 該當하는 階段

터以内마다 階段站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되는 곳은 階段의 階段站의 段넓이는 1.2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1) (2) 以外에 있어서의 階段



階段站의 디딤 바닥폭 ≥ 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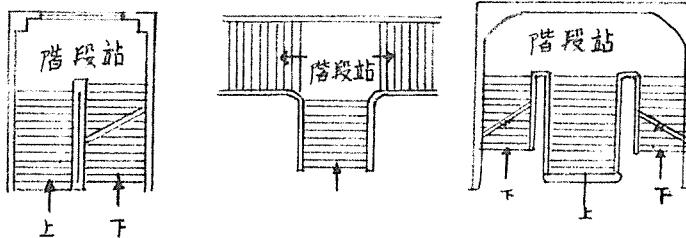


그림 (令16)

令第17條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

- ① 階段 및 階段站의 兩側壁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이나 이와 代置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欄干을 設置하여야 한다.
- ② 階段의 幅이 3 미터를 넘을 때에는 中間에 欄干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段높이가 15센치 미터 以下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 以上의 것은例外로 한다.
- ③ 前 2項의 規定은 높이 1 미터 以下의 階段의 部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條文에는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으며 階段의 幅이 3 미터를 넘을 때에는 段높이가 15센치미터 以下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 以上의 것을例外로 하고는 반듯이 中間에

欄干을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높이가 1 미터 以下의 階段의 部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하여도 좋도록 規定되어 있다.

令第18條 (階段에 代置되는 傾斜路)

- ① 階段에 代置되는 傾斜路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1. 勾配는 8 分의 1 以下로 한다.
 2. 表面은 粗面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은 材料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 ② 前 3條의 規定(段높이 및 디딤바닥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는 前項의 傾斜路에 이를 準用한다.

階段에 代置할 수 있는 傾斜路의 規定으로서 勾配 및

미끄러지지 않은材料로서 表面을 마감할 것을規定하고 있다.

令第19條 (特殊用途에 專用되는 階段)

令第15條乃至 令第17條의 規定은 昇降機械室用階段, 望樓用階段, 其他 特殊한 用途에 專用되는 階段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特殊用途에 專用되는 階段은 令第15條의 階段 및 階段站의 幅과 段높이 및 디딤바닥치수, 令第16條의 階段站의 位置 및 段넓이, 令第17條의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여도 좋도록 規定하고 있다.

便所에 關한 規定

法第20條 (便所)

- ① 下水道法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內의 便所는 水洗式으로 하여야 한다.
- ② 便所에서 排出하는 汚物을 前項의 下水道以外에 放流하고자 할 때는 衛生上支障이 없는 構造의 汚物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은 下水道法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內의 便所는 水洗式便所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2項은 前項의 下水道區域以外에 放流하고자 할 때에는 衛生上支障이 없는 構造(令24)의 汚物淨化槽를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終末處理場”이라 함은 下水를 最終的으로 處理하여 河川, 바다 기타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為한下水道의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令第20條 (便所의 採光 및 換氣)

便所에는 採光 및 換氣를 위하여 直接 外氣에 接하는 窓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水洗式便所로서 이에 代置되는 設備를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便所는 水洗式便所로 하는外에는 採光 및 換氣를 위하여 直接 外氣에 接하는 窓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21條 (除去式便所의 構造)

除去式便所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1. 小便器부터의 汚水管, 便槽 및 그 上口의 周

圍는 耐水材料로 만들고 浸透質의 耐水材로 만들 때에는 防水를 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類似한 有效防水措置로서 漏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便所의 바닥은 耐水材料로 다른 部分과 區割하여야 한다.
3. 除去用開口部는 直接道路에 面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下端을 地盤面上 10센치미터 以上으로 하고, 이에 密閉할 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4. 除去用開口部의 前方 및 左右 各 30센치미터까지의 部分의 地盤面을 콩크리트 敷土다시키, 기타 이와 類似한 材料로 覆蓋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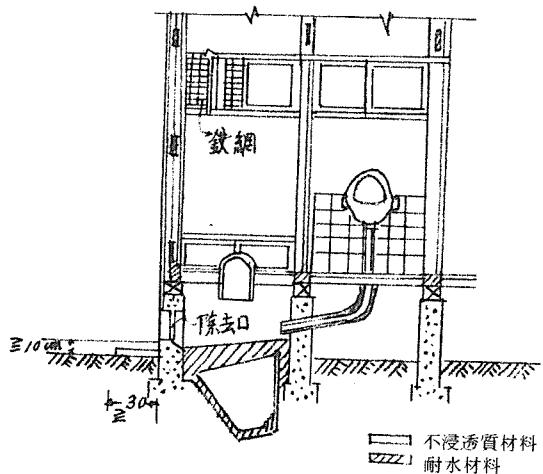


그림 (令21)

令第22條 (特殊建築物 및 特定區域의 便所의 構造)

- ①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學校, 病院,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 集會場, 百貨店, ホテル; 旅館, 寄宿舎, 停車場,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指定하는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便所 및 公衆便所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1. 不浸透質의 便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2. 小便器부터 便槽까지는 不浸透質의 汚水管으로 連結하여야 한다.
3. 水洗便所以外의 便所(便所의 出入口를 密開할 수 있는 門이 없을 때에는 大便所)의 窓, 기타 換氣를 為한 開口部에는 파리를 막는 金屬網을 씌워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体는 前項의 用途의 建築物 또는 條例로 指定하는 區域內의 建築物의 除去式便所便槽를 第23條의 改良便槽 또는 第24條의 水洗式便所로 하는 것이 衛生上 必要하고 또한 이를 有效하게 維持할 수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條例로 이를 改良便槽 또는 水洗式便所로 하여야 하는 内容의 規定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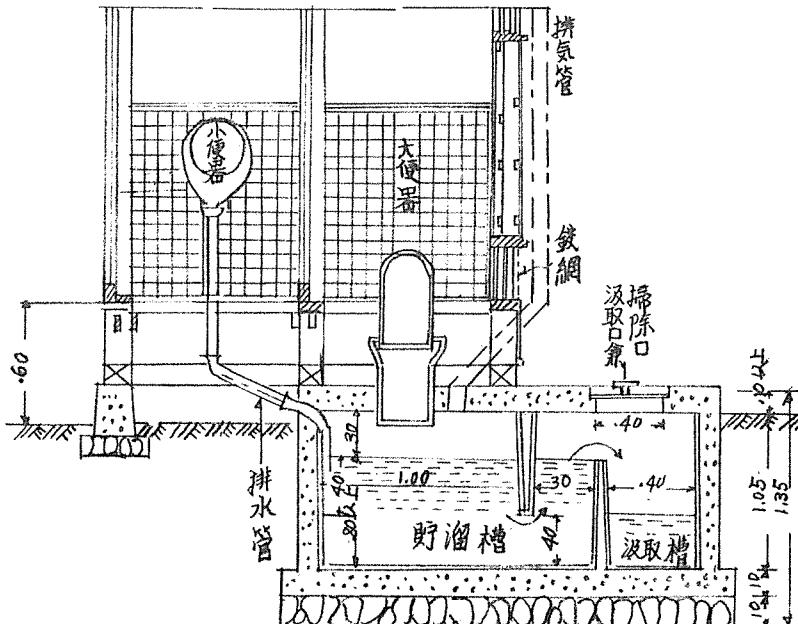
特殊建築物 및 特定區域의 便所의 構造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令第23條 (改良便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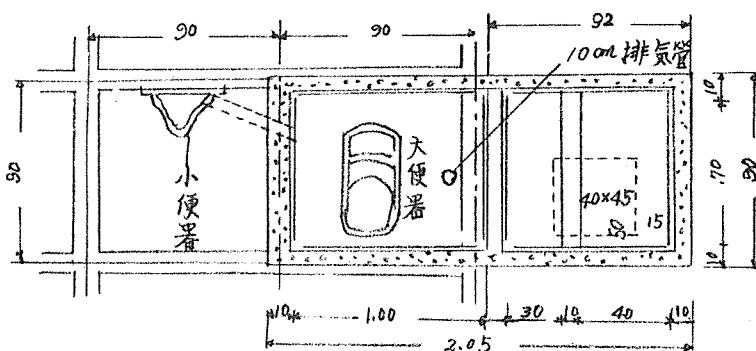
改良便槽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特殊한 構造로서 市長, 群守가 이와 同等以上으로 衛生上 效果가 있다고 認定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1. 便槽는 貯溜槽 및 떠내기槽를 組合한 構造로 하여야 한다.
2. 便槽의 天井, 바닥, 周圍 및 隔壁은 耐水材料로 만들고 防水물질로 塗裝하거나 기타 有



斷面圖



平面圖

그림 (令23)

效한 防水措置를 하여야 한다.

3. 貯溜槽는 2個槽以上으로 區分하고, 污水를 貯溜하는 部分의 깊이는 0.8미터 以上, 容積은 0.75立方미터 以上으로서 100일 以上 貯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貯溜槽에는 掃除하기에 必要한 크기의 開口部를 設置하고 이를 密閉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小便器부터의 污水管은 그의 先端을 貯溜槽의 污水面下 0.4미터 以上의 位置에 插入하여 야 한다.

令第24條 (水洗式便所의 汚物淨化槽)

- ① 法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안에서 同一建築物內의 便所 使用對象人員이 50人을 超過하는 建物에는 淨化施設을 附

設한 水洗式便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法第20條第2項에 規定하는 汚物淨化槽는 汚物을 衛生上支障이 없을 程度로 淨化하여 放流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特殊構造로서 市長, 郡守가 이와 同等以上으로 淨化할 수 있다고 認定한 것은 例外로 한다.

1. 汚物淨化槽는 腐敗槽, 酸化槽 및 消毒槽를 차례로 組合한 構造로 하여야 한다.
2. 汚物淨化槽의 天井, 바닥, 周壁 및 隔壁은 耐水材料로 만들고 防水물탈로 塗裝하거나 기타 有效한 防水措置를 하여야 한다.
3. 腐敗槽, 酸化槽 및 消毒槽에는 각각 안지름 40센치미터 以上의 間홀을 設置하고 그위에 이를 密閉할 수 있는 耐水材料 또는 鐵製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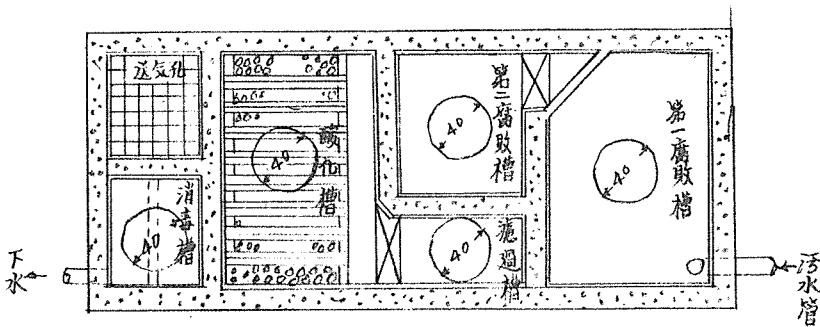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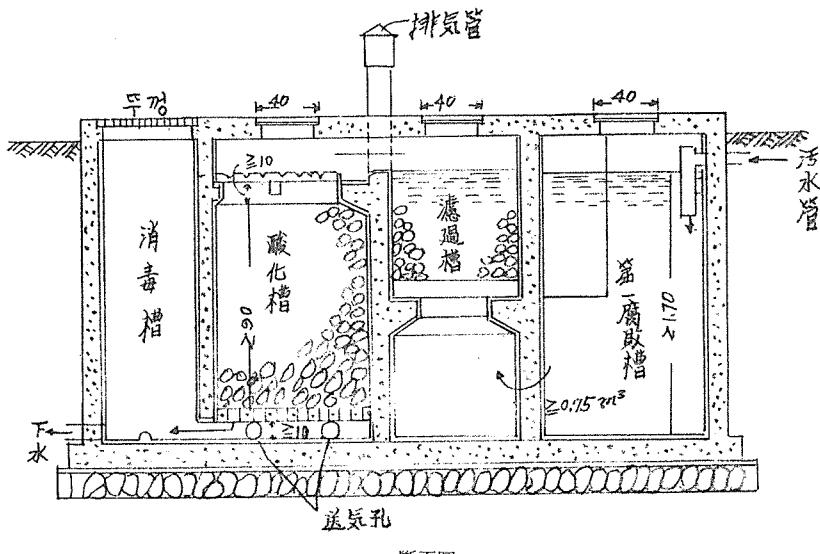


그림 (令24)

4. 腐敗槽는沈澱分離槽 및豫備濾過槽를組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腐敗槽의污水를貯溜하는部分의 깊이는 1.2미터以上으로 하고 그의容積은當該水洗式便所의使用人員 15人分까지는 0.75立方미터以上으로 하고, 使用人員의增加에比例하여 이를增加하여야 한다.
6. 酸化槽는散布濾過床式으로 하고 排氣管 및送氣口를設置하거나 기타必要한通氣設備를하여야 한다.
7. 酸化槽의散水홀통의下面과碎石層의上面과의거리는 10센치미터以上, 碎石層의두께는 90센치미터以上, 碎石層의體積은腐敗槽의污水를貯溜하는部分의容積의 2분의 1以上, 碎石받이의下面과통밀과의거리는 10센치미터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令第25條 (漏水検査)

第23條의改良便槽 및前條의汚物淨化槽는滿水하여 24時間以上漏水하지 아니하는 것을確認하여야 한다.

改良便槽 및汚物淨化槽는漏水되지 아니하도록試驗에依해서確認할 것을規定하고 있다.

令第26條 (便所와 우물과의距離)

除去式便所의便槽는우물부터 10미터以上 떨어져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地盤面下 3미터以上埋設한閉鎖式우물로서 그의導水管이不浸透質로만들어졌거나導水管에안지를 25센치미터以下의外管이있어導水管 및外管이모두不浸透質로만들어졌을 때에는 3미터以上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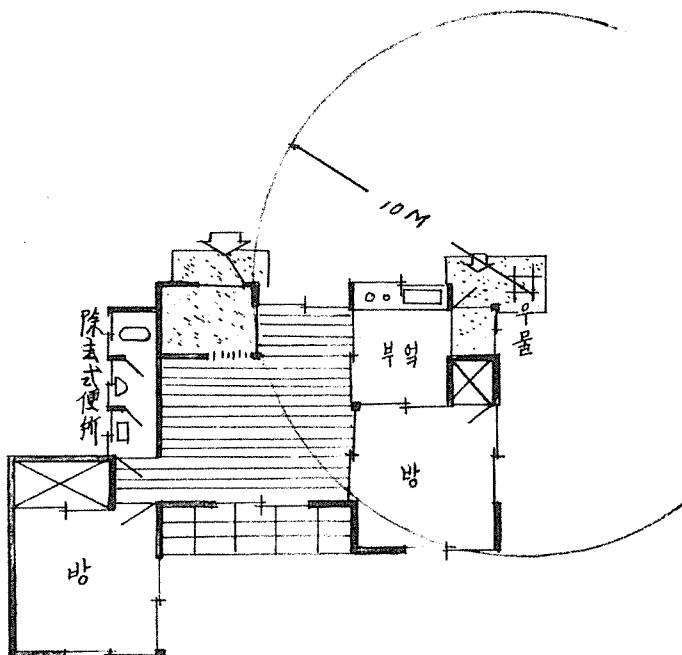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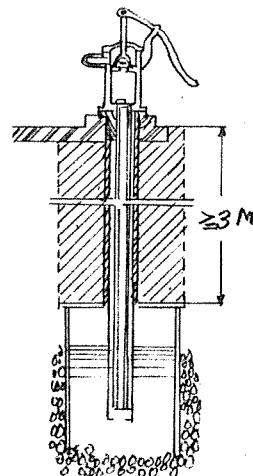


그림 A (令26)



閉鎖式 우물의一般的構造

그림 B (令26)

建築設備에關한規定

法第21條 (避雷設備)

높이 20미터以上인建築物에는避雷設備를하여야 한다.

建築物의높이는(令6. 5. (나))의規定에依해서

建築物의屋上部分의水平投影面積에不拘하고地盤面으로부터의높이를말한다.

避雷設備는建築物의높이 20미터를超過하는部分을雷擊으로부터保護될수 있도록設置하지 않으면안된다.

法第22條 (昇降機)

建築物에 設置하는 昇降機는 安全한 構造로 하여야 하며 그 昇降機의 周壁 및 開口部는 防火上支障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昇降機 自体는 機能上 安全한 構造이어야 하며 그 周壁 및 開口部는 建築物의 防火上支障이 없는 構造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22條의 2 (駐車場設置)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築物을 新築, 改築(一部의 改築을 除外한다) 또는 再築을 하고자 할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建築物을 增築하고자 할 때에는 그 增築하는 部分과 既存建築物과의 延面積의 合計가 前段에 規定하는 規模以上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規定을 適用할 行政區域과 駐車場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築主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以上의 建築物을 新築, 改築, 再築하고자 할 때와, 建築物을 增築하고자 할 때 增築하는 部分과 既存建物과의 延面積의 合計가 大統領令으로 規模 以上인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適用區域과 駐車場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4條 (駐車場設置基準)

① 人口 10萬 以上의 都市의 行政區域 안에서 延面積 2,0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法第22의 條 2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建築物 또는 그 垒地내에 다음 基準에 依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市場,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用의 專用駐車場이 있음을 認定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1. 延面積이 2,000平方미터 以上 2,400 平方미터 未滿인 때에는 6台 以上을 駐車시킬 수 있는 駐車場.

2. 延面積이 2400平方미터를 超過할 때에는 超過하는 每 500平方미터마다 1台의 比率로 加算한 駐車場.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하는 駐車場의 駐車部分은 駐車台數 1台에 對하여 幅 2.5미터 以上, 길이 6 미터 以上으로 하고 自動車가 有效하게 出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 市長, 郡守는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에 있어서 第1項 各號의 基準을 適用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建築物 및 駐車場의 規模를 따로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法第22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駐車場設置를 하여야 할 行政區域은 人口 10萬 以上의 都市의 行政區域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建築物로서는 延面積이 2,000 平方미터 以上일 때에 駐車場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고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用의 專用駐車場이 있음이 認定될 때에는例外로 되어 있다.

- a. 延面積이 2,000m² ~ 2,400m² 일 때 6台
- b. 延面積이 2,400m² 를 超過할 때에는 超過하는 每 500m²마다 1台의 比率로 加算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며, 駐車場의 駐車部分은 駐車台數 1台에 對하여 幅 2.5미터 以上, 길이 6 미터 以上으로 하고 自動車가 有效하게 出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實際駐車面積은 1台當 15平方미터이나 出入하는 通路面積까지 合算하면 駐車方法에 따라 다르나 20平方미터 乃至 30平方미터 内外가 된다. 地下層이나 一層部分에 駐車場을 配置하고자 할 때에는 기동配置等을 充分히 考慮하여 駐車場의 面積을 計算하여야 할 것이다.

駐車方法은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 a. 平行駐車
- b. 斜行駐車
- c. 45° 斜角駐車
- d. 60° 斜角駐車
- e. 直角駐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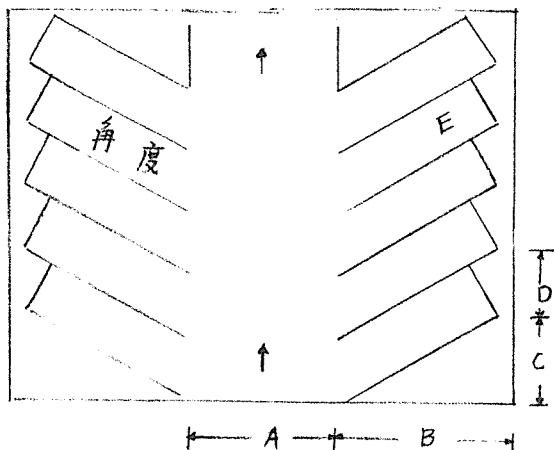
第3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에 있어서는 第1項 各號의 基準을 適用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는 建築物 및 駐車場의 規模를 規則으로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駐車方法에 依한 1台當必要한 駐車面積은 다음 表와 같다. (建設部制定 都市計劃樹立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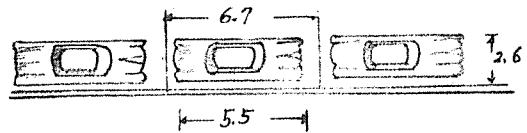
路上駐車場(On Street Park)의 경우

駐車形式	1台當 所要面積	A	B	C	D	E
平行	27.59m ²	M 3.36	M 2.24	M 6.71	M —	M 2.44
30°	31.12	3.51	4.58	6.53	4.27	2.44
45°	27.78	3.66	5.19	5.19	3.45	2.44
60°	25.64	5.49	5.49	3.17	2.81	2.44
直角	21.18	7.02	5.19	—	2.44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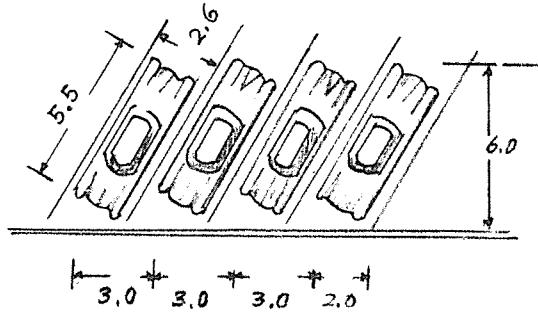
路上駐車區割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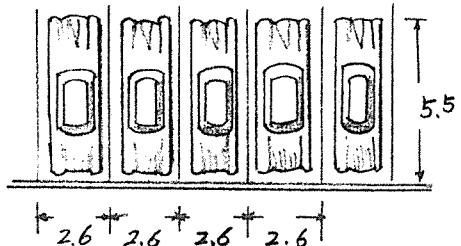
駐車區割配置尺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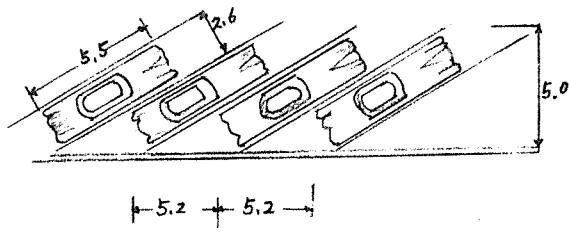
平行駐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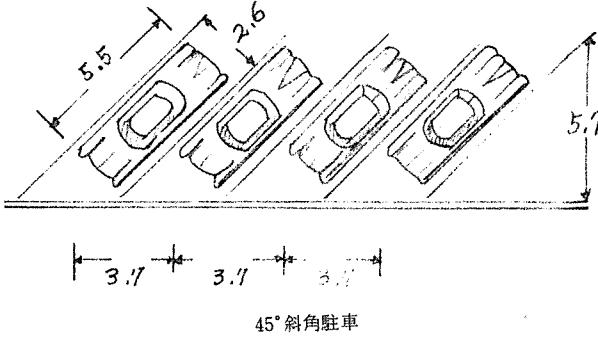
60°斜角駐車



直角駐車



30°斜行駐車



45°斜角駐車

法第22條의 3 (地下層의 設置)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을 適用할 行政區域과 地下層의 規模, 構造, 設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 및 規模 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하고 適用區域과 地下層의 規模, 構造, 設備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6條 (地下層設置基準)

- ① 法第22條의 3의 規定에 依하여 人口 20萬 以上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하는 都市의 行政區域内에서 地上層의 延面積 200平方미터 以上的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法第22條의 3에 規定에 依하여 다음 基準에 依

한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倉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과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의 地下層에 갈음할 施設 또는 自然條件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에는 그 延面積의 10분의 1 以上의 地下層.
2. 學校,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百貨店, 市場等 大衆의 用에 供하는 特殊建築物과 工場에 對하여는 収用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1人當 0.25平方미터 以上의 地下層.
- ② 地下層의 主要構造部는 第83條에 規定한 耐火構造로 하여 地下層의 面積의 合計가 1,000平方미터 以上일 때에는 地下各層으로부터 外部로 連結하는 直通避難階段을 1個所以上 設置하고 甲種防火門으로 區劃하여야 한다.
- ③ 市長,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區域内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上層의 延面積이 6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에도 地下層을 設置하게 할 수 있다.

第1項에서는 人口 20萬以上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하는 都市의 行政區域 안에서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하며, 倉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과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의 地下層에 갈음할 施設 또는 自然條件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여도 좋도록 되어 있다. 이는 防空關係에 對備해서 地下層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 a.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

에는 그 延面積의 10分의 1 以上의 地下層.

(b) 揭記한 建築物을 除外한 建築物)

- b. 學校,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百貨店, 市場等 大衆의 用에 供하는 特殊建築物과 工場에 對하여는 収用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1人當 0.25平方미터 以上 地下層.

第2項에서는 地下層의 主要構造部는 第83條에 規定한 耐火構造로 하여야 하며, 地下層의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 以上일 때에는 地下各層으로부터 外部로 連結하는 直通避難階段을 1個以上 設置하고 甲種防火門으로 區劃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3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第1項의 區域안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는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下인 6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에도 地下層을 設置하게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5條 (國旗掲揚台의 設置等)

- ① 商業地域내에 있는 幅員 15미터 以上의 道路에 面하여 2層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上으로부터 8미터 支點의 壁面에 높이 2미터의 國旗掲揚台를 道路에 面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 ② 3層以上의 建築物 또는 延面積 1,5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을 新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에는 同建築物의 1層에 있는 出入口, 管理事務所, 守衛室이나 그 附近에 建設部長官의 協議를 얻어 遷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郵便物受取函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 條文에서는 都市美觀上의 見地서 一定한 位置에 國旗掲揚台, 出入口, 管理事務所, 守衛室, 郵便物受取函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1971. 3. 1 ~ 3. 31

방첩 및 승공사상 양양기간

『복괴는 노린다

분열과 혼란을』